신청 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ㅇ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4]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4)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3~150만 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3~260만 원	4,000만 원 미만	자녀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0만 원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기타요건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부가가치세법시행령 § 109조②7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화면하단)에서 가능

유의 사항

①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④ 기한 후 신청(6.1.~11.30.)의 경우 산정금액에서 1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⑥ 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자가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 수준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⑦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